

#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을 대비한 각시도지부의 의견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을 대비한 각시도지부의 의견서를 아래 몇가지 설문으로 취합게재 합니다.

- 설문 1. 도서등록 신고에 대해서
- 설문 2. 건축사 자격 시험문제
- 설문 3. 합동사무소문제
- 설문 4. 보조사문제

## 1. 제출회원명 : 강 은 홍 (제주도지부회원)

- 설문 1 : 도서등록 사후 신고제에 대한 대비  
건축사법 제22조의 도서등록 업무는 사전신고가 되어야 함.  
사전신고제를 채택 시행함으로써 도서작성의 향상과 통계 또는 계통적인 제반 업무 파악등에 필요함.
- 설문 2 : 2급 건축사의 자격시험 전과목 응시에 대한 대책  
전과목 응시는 있을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는 사법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2급 건축사 자격 취득 당시 응시과목을 제외한 특수 몇과목만 면접 또는 필기시험을 치루고 또한 과목 합격을 2회 정도 인정하여 응시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건축사자격을 취득케하는 것이 건축사 2원하를 해소하는 길임.
- 설문 3 :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ㄱ) 합동사무소는 권장하는것이 좋다.  
사무소의 질적향상과 기술적 교환목적등을 위한 합동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행정위주의 합동내지 연대책임을 위한 합동사무소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행할 경우 2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ㄴ) 업무한계를 정할 필요는 없음.
- 설문 4 : 보조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한데 대한 대책  
설계사무소는 의무적으로 보조사 1인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사무실 면적규정도 필요하다.

## 2. 제출회원 : 문 자 원

- 설문 1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제를 찬성함.  
사후신고제일 경우에는 건축허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할 것임.
- 설문 2 에 대하여  
2급 건축사 사무소 경영실적(년수) 이 일정한 범위가 지났을 때는 실습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건축사 자격을 부여해야 할것임.  
전과목 응시제도는 바람직치 않으며 만약 전과목 응시제도가 될 경우에는 일회 전과목 합격 제도를 지양하고 과목 합격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임.  
(단, 2급 건축사 자격취득당시 응시 합격과목은 제외하고 특수과목만 구술전형)
- 설문 3 에 대하여  
ㄱ) 2인 이내 합동사무소 필요    ㄴ) 업무한계는 필요없다고 사료됨.
- 설문 4 에 대하여  
보조사 1명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는것이 좋음.

대구 건축설계사무소 고 만 권

1. 건축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다음달 5일까지 일괄하여 협회 시도 지부장에게 신고하며 신고와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따라서 각 분소는 필연적으로 폐쇄되며 각 시도 지부의 도서 등록에 소요되던 예산(직원의 인건비 수당 등)은 감소될 것임.

2. 전과목 응시를 하되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여 향후 3년간 전과목 합격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건축사와 구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급건축사라 한다)가 혼성으로 조직된 합동사무소는 2급건축사라 할지라도 그 업무 한계를 넘어서 건축사의 업무를 수탁하여 혼성으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의 건축사 명의로 설계감리를 할 수 있음으로 혼성된 합동 사무소의 2급 건축사는 타 건축사의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므로 등급별 합동사무소를 구성하여야 할것임.

3 - 2. 15,000 m<sup>2</sup> 이상의 특수 건축물과 30,000m<sup>2</sup>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 합동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660m<sup>2</sup>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2급 건축사의 합동사무소에서 하여야 할것임.

※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건축사 2명 이상의 합동 사무소의 최소 면적은 150m<sup>2</sup> 정도 소요 되리라고 볼 때 150m<sup>2</sup> 이상의 대형 사무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므로 동일사무소가 아니라도 동일구청 관할 내이고 각 사무소의 거리가 300m 이내일 때는 건축사 연대 책임하의 합동사무소는 가능하도록 시행 세칙에 제정되도록 그 길을 부측에서 떼 놓아야 할것임.

4. 보조사는 건축사의 경우 1명에 2인, 2급 건축사의 경우 1명에 1인으로 하는것이 타당할 것임.

당지부회원들의 의견을 별적과같이 제출하나다.

충북지부 지부장 오 석 균

1. 도서등록 사후신고제에 대한 설문

사후신고제로 될 경우

- 1) 건축행정의 질서가 문란할 소지가 다분하며
- 2) 협회운영에 문제점이 많을 것이고
- 3) 덤핑방지를 제제할 수 없고
- 4) 회원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없어 입장도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사전신고제가 되어야 한다.

2. 2급건축사의 자격 시험 전과목응시에 대한 대책

- 1) 2급 건축사는 일정한 과목면제를 바람.
- 2) 7년이상된 2급건축사는 서류전형으로 결정바람.
- 3) 일정기간 연수한 후 건축사로 승격다람.

3. 합동사무소에 관함

- ㄱ) 20만이상 도시에서도 2인이상 기타 지역에서도 2인 이상으로 합동 하는데 대한 대책 타당하다고 봄
- ㄴ) 15,000평방미터 이상의 특수 건물과 30,0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 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합동 사무소에서 설계할 수 있는데 대한대책 찬반양론임.

4. 보조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한데 대한 대책

보조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법을 개정 건축사임의에 맡기도록 함이 좋으나 개정이 불가능상태에서는 건축사 1인에 보조사 1인을 둘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함.

건축사법 시행령에 대비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지부소속 과반수회원들의 집약된 청취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김 기 배

가. 도서등록 사후 신고제에 대한 대비

1) 사전신고제를 찬성함

- (가) 도서작성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 (나) 사후신고제로 하면 무면허 건축사의 난립을 제지 할 방법이 없음.
- (다) 사후 신고제로 하면 행정적인 제반 부조리가 발생할 뿐더러 회원간의 유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나. 2급 건축사의 자격시험 전과목 응시에 대한 대비

- 1) 국가에서 건축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사무소를 개설하여 왔는 바, 지금에와서 전과목 응시 또는 자격시험 운운하는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일정한 교육실시후 엄격한 심사와 전형 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합동 사무소에 관한

- 1) 20만 이상 도시 또는 기타지역에서는 2인이상으로 합동하는에 대한 대비

가) 인구 50만이하 도시는 2인이상 50만이상도시에서는 3인이상 합동 하는것이 좋다고 사료됨

- 2) 15,000평방미터 이상의 특수건물과 30,000m 이상의 일반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합동 사무 에서만 설계할수 있는데 대한 대책

(가) 여러사람이 창작할수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나 조형예술인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작품이어야하지 여러사람의 작품이라고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라. 보조사 인원수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었음

- 1) 현재 기술인력난이 심각한 이때에 한정된 기준 인원 확보는 불가능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보조사 확보가 더욱 심각한 바, 전국적으로 기술인력이 순환될때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당 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경남지부 지부장 김 정 수

1. 도서등록 사후신고에 대한 설문

답 : 1) 관할공무원의 입장에서 6시 19군으로 산재한 본 지부의 경우 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한 자의 도서등록 접수가 있을시 담당건축사의 인감위조 또는 도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행정처분 및 후, 폐업건축사의 업무행위 방지 또는 무면허 무등록자의 설계업무 행위등을 색출할 도리가 없으므로 이는 위법및 사이버 사무소의 발생원인이 되어 날로 건축행정의 질서는 문란해 질것으로 사료됨.

2) 현재까지는 협회회원의 설계도서가 사전에 신고됨으로서 상기부당한 설계업무행위는 일체 방지 되고 있음.

3) 협회운영면에서 본 협회는 회원의 실적 회비및 정회원 회비로서 운영되고 있는 바 사후 신고의 경우 본 지부 해당25개 시군에 접수처리되는 설계도서에 대한 조사통계 및 출장확인과 개별적인 회비징수에는 대단한 애로가 뒤따르므로 본 협회의 운영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며 조사 전 담직원의 증원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는 현건축예산의 체제에 역행되는 사례임.

2. 2급 건축사의 자격시험 전과목응시에 대한 대책.

답 : 1) 건축사법 제 8조 1항에 의거 건축사의 급별표시가 없어짐에 따라 그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업무상 혼란이 있음.

2) 종전 2급 건축사에 대한 건축사로서의 자격 취득에 있어 일정한 시험을 통과토록 함에는 수공이 가나 과연 현재까지 수년, 수십년을 실무에 몰두하여온 건축사로서 당초 시험응시의 방법에 의한 합격률 기대할수가 있을것인가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만약 시험과목 및 방법이 건축사 면허시험과 동일시될 경우 종전 2급 건축사의 존재는 매우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는 이제껏 국가건설에 이바지하여온 건축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상 혼란의 요인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건축사 업무실적년 한 또는 연수회 수료증과 관련한 전형방법의 선택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3) 종전 2급건축사에 대한 전형방법이 결과적으로 전과목 응시제도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 본 협회에서는 소정과목을 취합요약한 연수과정 이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3. 합동사무소에 관한

가. 20만이상 도시에서는 2인이상 기타지역에서는 1인이상으로 합동하는데 대한 대책.

나. 15,000m<sup>2</sup> 이상의 특수건축물과 30,000m<sup>2</sup> 이상의 일반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합동사무소에서만 설계할 수 있는데 대한 대책.

답 : 건축이 종합예술인 점은 이에 공인되는 사실인즉 건축활동에 있어 각기의 개성이 특히 뚜렷하여 더구나 개인적인 활동범위를 서로 다른 바 만약 연대합동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무소 운영방법과 수입의 차등 등으로 인한 이합현상 내지 분쟁은 어떠한 규정과 제도로서 방지될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권장 사항으로 무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합동사무소의 운영은 원칙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특별 한 대책수립도 없다고 사료됨. 끝

建築士法 施行令이 國務會議를 通過하였으나 時間上 이번호에는 掲載치 못하고 다음호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